2019년도 제18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자 : 2019. 9. 11.(수요일)

o 방　　법 : 온라인심의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회의내용 및 결과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0건(안건번호 제2019-111980호~11207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도도파일' 사이트의 '(영화)사자 (2018)' 등 100건의 게시물(안건번호 제2019-111980호~112079호)은 모두 불법 복제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 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기로 의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제2019-111980호~제2019-112079호의 심의안건 100건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함

- C 위원 : 금번 심의안건들은 모두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함.

2019년 제18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18.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